

제 1345 호  
1987. 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인보원  
편집인: 공보관 김성진  
전화: 721-8111-3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일동  
전화: 755-3337

제	1345호	발행	1987. 2. 20	공보관	김성진
---	-------	----	-------------	-----	-----

# 시보

## 차 례

- ◎ **공판시법**  
공공유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용지침 시달..... 3
- ◎ **조 례**  
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6  
제 2145 호: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통합징수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 조례..... 7  
제 2146 호: 서울특별시임 보건설수가 조령중 개정조례..... 7

(이면계속)

공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⑩	규 칙	
	제 2157 호 :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8
	제 2158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8
	제 2159 호 :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10
⑪	고 시	
	제 107 호 :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사격표 및 연동가적표시.....18
⑫	사 령	

공문시행

“뜻모아 하나로, 실행모아 세제로”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건행 30241-235

( 731-6372 )

1987. 2. 20.

수신처 : 수신처 참조

제목 :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용지침시달

1. 전선부 토행 30241-2110 ( 87.2.6 )호와 관련임.

2. '86.11.29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입법취지 및 그 운용지침을 번철과 같이 시달하니, 각 보상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첨부 : 운용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직관 01, 서과 01-67, 서구 01-17, 서사 01-5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개정에따른운동지침

1. 제 4 조 제 2 항의 신설은 사유재산 권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위한 토지등의 평가후 장기간이 경과되어도 당초 평가액율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상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지급토록한 규정으므로 1필지의 경우라도 평가후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명일 경우에는 평가후 1년 이내에 동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 6 조의 2 제 3 항의 사실상의 사도라함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개설한 도척을 말하며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함으로써 도로가 된 경우나 도시계획도로(일단의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수없으므로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할 경우에는 도로의 개설자, 편익여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여부등 제반사항을 명

확히 파악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잘못적용으로 피해를 입는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원가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비교하여 이중 높은것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등 거래사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것보다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동조 제 5 항의 주거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가족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주거비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기간동안의 월세금으로 지급하는 취기이므로 반드시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제 30 조의 2) 만 지급하여야 한다.

- 4. 제 12 조 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은 영전시설 평가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제 6 항은 영전내의 시설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제 7 항은 방조제동 영전외곽 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재방, 식숙 등의 설치비용은 실제로 영전외토지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시설은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영전토지의 1/4 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전외 토지에 대한 평가는 동규칙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5.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은 제 2 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 또는 가금 이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 또는 가금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개의 사육등) 동항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제 2 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 또는 가금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제 2 항의 예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제 22 조의 광업권의 소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광업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전외 보상평가를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적으로 광업관계법령이 정한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영전외 보상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광업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 7. 제 24 조 2 항의 영업의 배치중 제 3 호의 경우는 제 1, 2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조업, 제조업 등과 같이 동상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중음식점이나 다방과 같이 건물만을 임대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영업은 제 3 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당초의 영업시설보다 더 좋게 함으로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 8. 제 24 조 제 3 항은 일부채자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영업대상구역이 관계 법령으로 한정된 영업으로서 그 일부구역이 축소되었을 때에 그 보상액은 영업의 성격에 따라 면적, 이용인구등을 감안하여 축소된 영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9. 제 20 조의 2 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의 지급은 공공사업의 인가, 허가등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저장물등을 철거할 수 있는 공공고시등이 있는날 현재 실제로 1 개월이상 거주한자로서 보상신청 현재까지 거주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율 기준으로 하되 가옥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0. 제 30 조의 3 휴직 또는 실적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무사실판정은 봉급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1. 부칙 제 2 항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에 있어서는 86. 11.29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며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 5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유보한 경우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0 조 제 5 항의 주거비와 제 30 조의 2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는 86. 11.29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사비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물철거 또는 이사를 할 때 지급할 수 있으며 제 30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휴직 또는 실적보상은 영업등이 휴업 또는 폐업시에 지급할 수 있다.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등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올림픽대회를 아파  
트등의 기부금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올림픽경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울특별시올림픽대회용아파트등의 건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서울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올림픽대회용아파트를 기부금입찰제로 분양 취득할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등) ①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접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②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기부금 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후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취득 또는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정수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5 호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 통합정수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용료, 수수료통합정수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대성도시가스(주)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기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의수거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46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단서중 "종합기술시험연구소"를 "보건원경연연구소"로 한다.

제 2 조 제 2 항 별표 중 구분란 제 2 호 ( 먹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 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숙박업소를 통한 콘돔 보급수수료는 100 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57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 사무분장 ) 제 1 항 ( 별표 1 ) 수사과 수사제 10 호 및 11 호를 삭제한다.

제 4 조 ( 사무분장 ) 제 1 항 ( 별표 1 ) 수사과 형사제 15 호, 16 호 및 1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우범자관찰 및 자료관리

16.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17. 학원, 노사동 집단범죄 및 유인물 사범의 수배, 검거, 조사, 신병처리

부 칙 (1987. 2.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58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 공보관 ) 제 2 항 제 1 호 "다"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 목을 삭제하고 "바" 목 내지 "자" 목을 "마" 목 내지 "아" 목으로 한다.

다. 광고영화검열

제 7 조 ( 시경개발담당관 ) 제 2 항 제 2 호 "사"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구대책총괄조정

제 8 조 ( 법무담당관 ) 제 2 항 제 1 호, "아" 목을 "자" 목으로 하고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행정심판시정처리에 관한 사항  
 제 16 조 (행정과) 제 2 항제 2 호 "사" 목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행정서사 및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제 22 조 (세징과) 제 2 항제 1 호 "마" 목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 구세무행정외 전반적 지도  
 동조동항제 2 호 "가" 목 및 "다" 목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가. 이의신청 심의결정  
 다.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운영  
 동조동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가제  
 가. 토지승급심정 및 수정계획총괄  
 나. 건물외의 중별 심정과 수정  
 다.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승인  
 및 시가조사  
 리.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부녀  
 설치시기조사  
 마. 차량, 중기 및 항공기 시가  
 조사 및 과표결정  
 바. 도축세 과표업무  
 사.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운영  
 제 23 조 (새무지도과) 제 2 항제 2 호  
 "마" 목을 삭제한다.  
 제 25 조 (보건위생과) 제 2 항제 1 호  
 "다" 목을 삭제하고, "라" 목 내지  
 "바" 목을 "다" 목 내지 "마" 목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 2 호 "라" 목을 삭제하고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 목 내지 "사" 목을 "라" 목 내지  
 "바" 목으로 하며  
 바. 영양사 및 조리사의 지도감독  
 동조동항제 3 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바. 숙박인소, 목욕장업소, 수영장업소,  
 이음업소, 미용업소, 유가장업소, 세탁업  
 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업소, 수  
 키리제제조업소, 석력제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소 및 장난감제조업소  
 에 대한 구령심지도감독  
 동조동항제 4 호 "바" 목을 삭제한다.  
 제 27 조 (사회과) 제 2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사회계  
 가. 시민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과 종합조정  
 나. 법인 및 시설 (양노, 강애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인허가 및  
 운영지도감독  
 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지도감독  
 라. 부랑인 (성인남자) 단속 수송  
 업무지도감독  
 마. 행어 사망자 처리업무  
 바. 묘지 및 화장에 관한 사항  
 사. 장묘사업소 지도감독  
 아. 장의제도 (장의사, 장의식장)  
 업무  
 자. 파내 다른계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동조동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호계  
 가. 영세민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나.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다. 영세민 지방이주 업무  
 라. 이웃돕기 기금관리 운영에 관  
 한 사항

제 29 조 (부녀 청소년과) 제 2 항 제 1 호  
“바”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바. 산하사업소 지도감독

제 32 조 (농축과) 제 2 항 제 1 호 “다”  
“리” “아” “차”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고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제외)  
의 지도

라. 농업생산 (전작 및 담작에 관  
한 사항) 및 장려계획의 수립

아.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지  
도감독

차. 수산증식 및 수산제조에 관한  
사항

동조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 축산제

가.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나. 사료수집 및 품질관리

다. 축산물 수급조절 및 축산물  
도매시장 지도

라. 축산업, 종축업, 부활어, 인공수정  
소의 허가 및 등록과 지도감독

마. 낙농지도 및 우유소비에 관한  
사항

바. 축산단체 (지역축협등) 지도

사. 가축 통계조사

자. 사양하는 여우 및 조류의 수  
입 추진업무

동조 동항 제 3 호 “나” 목 및 “시”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축산물 직접장 설치허가 및  
위생관리

사. 수위사업무 및 동물병원에 관  
한 사항

제 34 조 (도시계획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을 삭제하고 “다” 목 내지  
“마” 목을 “나” 목내지 “라” 목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 “나” 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나. 토지이용 계획수립 및 조정  
동조 동항 제 3 호 “가” 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가. 지역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 및  
조정

제 36 조 (구획정리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나. 구획정리사업 예산총괄 조정

제 37 조 (재개발과) 제 2 항 제 4 호

“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심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  
대, 질개지등 위험시설물 총괄

제 39 조 (건설행정과) 제 2 항 제 1 호

“가” “나” “리” 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고, “사” “차” 목을 삭제하고

“아” 목내지 “카” 목을 “사” 목 내  
지 “자” 목으로 하며

가. 국소관 행정, 예산의 조정통제

나. 전문 건설업자의 지도육성 및  
감독

라. 건설자재시험소 및 건설자재사  
업소 지도감독

동조 동항 제 2 호 “가” 목을 삭제하  
고 “나” 목내지 “리” 목을 “가” 목

<p>내지 "다"목으로 한다.</p> <p>제 41조 (건축지도표) 제 2항제 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다" "바" "사"목을 삭제하고 "라"목내지 "아"목을 "다"목내지 "마"목으로 하며,</p> <p>나.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시</p> <p>동조동항 제 2호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라. 건축물 분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p> <p>마. 건축상 제도운영</p> <p>동조동항 제 3호 "아"목 및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아. 건축물 관리대상관리 지도감독</p> <p>자. 일반지구와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 시설물의 총괄</p> <p>동조동항 제 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나. 영신리 예산 (산하기관 총괄) 총괄</p> <p>제 43조 (주택개발과) 제 2항제 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바.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의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p> <p>동조동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p> <p>2. 개량 1계 (한강이남지역 업무)</p> <p>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른 지도 감독</p> <p>나. 무려가정물 양성화 지도감독</p> <p>다. 재개발구역 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p>	<p>라.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p> <p>마. 기타 불량주택 (무허가 건물지역등) 재개발을 위한 특수사업</p> <p>바. 재개발구역 관리 처분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과 인가 및 지도 감독</p> <p>사. 건축공사 시공 지도감독 및 검사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p> <p>아. 환저 지시측량 및 지구분할 측량</p> <p>자. 환저확정을 위한 측량 및 환저확정 처분</p> <p>차.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p> <p>카. 새개발사업 지구내 행정 완료 업무</p> <p>다.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의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총괄</p> <p>동조동항 제 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p> <p>3. 개량 2계 (한강이북지역 업무)</p> <p>동조동항 제 2호 "가"목내지 "자"목과 동일하고</p> <p>동조동항 제 4호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내지 "아"목을 "바"목내지 "사"목으로 한다.</p> <p>제 45조 (환경과) 제 2항제 1호 "라"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지도감독</p> <p>바. 공해방지 시설업법에 관한 사항</p> <p>동조동항 제 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산업재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p> <p>제 46조의 2 (녹지과) 제 2항제 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카.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 축대, 철개지 등 위험시설물의 총발 제 52 조 (업무과) 제 2 항 제 1 호 “나” 목 및 “다”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바” 목 및 “사” 목을 신설하며,

나. 상수도사업 경영의 종합계획에 산출발 및 신사분석

다. 제 1 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당직, 청중단속

바. 상수도 공채발행 및 상환사. 상수도 총사 공무원의 연금, 의료보급관리

동조 동항 제 2 호 “나” “라” “마” 및 “사”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아” “자” 및 “차”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나. 급수사용료 (공업용수 포함)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라.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등 재심신청의 처리

마. 부정급수 (도수) 단속계획사. 수도 민원처리

아. 수도요금 전산처리 업무지도자. 위탁업무 (수도미터 점검통역) 지도감독

차. 군 급수 업무처리

동조 동항 제 3 호 “사”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스관 업무용 자재물품의 구입, 임대차, 운반과 용역에 관한 사항

제 53 조 (급수과)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및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제

가. 배수 및 급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나. 비상급수대책 (하절기 급수대책 포함)

다. 수압 조절과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급수와 자원등)

라. 소배수지 및 배수관 공사업무의 지도감독

마. 배수지 운영의 지도감독 (전기 및 기계분야는 제외)

바. 총배수관 분기 승인 업무사. 제수변 유지관리 및 조절업무의 지도감독

아. 배관부설 유관사업에 관한 사업자 공사대장관리 및 배관당도 정비

차.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누수방지제

가. 누수방지 및 급수시설의 보수에 관한 사항 (공업용수 포함)

나. 총·배수관 누수의 연구분석과 누수방지 계획

다. 노후 배급수관의 개량 (공업용수 포함) 및 통합공사 업무의 지도 감독

라. 기설 상수도관 (공업용수 포함)의 이설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 월등대책 추진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p>3. 급수장외계</p> <p>가. 가압장 유지관리 및 운영지도 (전기 및 기계분야 제외)</p> <p>나. 가압시설의 설치 및 통합개량 계획 (기계 및 전기분야 제외)</p> <p>다. 급수탑, 소화전, 공설공용전의 설치계획</p> <p>라. 위반 급수공사의 단속지도</p> <p>마. 급수공사 업무의 지도감독</p> <p>바. 양수기실의 설치, 개량 및 유지관리 지도</p> <p>사. 급수협외에 관한 사항</p> <p>제 54 조 (수원기전과) 제 2 항 제 1 호 “라” 목 및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라. 상수도사업용 전기 기계설비의 점검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p> <p>바. 양수기의 수급계획 및 기술에 관한 업무 (공업용 수도 포함)</p> <p>동조 동항 제 2 호 “나” 목 “라”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카” 목 “바”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p> <p>다. 광역 상수도 원수 수급계획 및 관리</p> <p>라. 공업용수 생산량 계획 및 시설 유지 관리 지도 (전기 및 기계분야는 제외)</p> <p>마. 공업용수 신규급수신청 승인 및 계약량 조정</p> <p>바. 상수도 생산량 계획 및 조정</p>	<p>동조 동항 제 3 호 “카”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수원지 방호시설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p> <p>제 57 조 (민방위과) 제 2 항 제 1 호 “마”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마. 병무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p> <p>제 61 조 (경무과) 제 2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무계</p> <p>가. 파내 직원의 복무 및 인사</p> <p>나. 경찰국 보안업무 및 산하 관서 지도감독</p> <p>다. 복무규율과 직권 근태</p> <p>라. 경찰의전, 행사 및 회의</p> <p>마. 당직 및 감독순서 지칭</p> <p>바. 경찰국의 사후 인제인수</p> <p>사. 경찰국 청사방호 및 산하관서 방호지도</p> <p>아. 경무협회 및 후생복지</p> <p>자. 국민저속조항 운영 관리</p> <p>차. 위안일지 및 경찰사 기록관리</p> <p>카. 고용직 및 잡급직 지도감독</p> <p>타. 기마대 관리운영</p> <p>파. 자재경비업무 및 자재경비대 운영</p> <p>하. 자체 민방위대 관리</p> <p>거. 해외 사사 여행업무</p> <p>너. 집무검열 및 환경미화</p> <p>어. 국내 다문과 및 파내 다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62 조 (교통과) 제 2 항 제 1 호 및 동</p>
--	--

<p>조동항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p> <p>1. 교통제</p> <p>가. 과내 직원 복무 및 인사</p> <p>나. 교통경찰(교통순시원 포함)에 관한 계파, 지도, 교양</p> <p>다. 교통 순시원 시험관리, 임용제 청 등 운영</p> <p>라. 견인차량 집중관리소 운영</p> <p>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p> <p>바. 제2달달관 소관 열수동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2. 교통안전제</p> <p>가. 교통규제 업</p> <p>나. 교통 사범단속 계획과 지도</p> <p>다. 법령위반 차량, 행정처분 집행</p> <p>라. 민간교통경찰대(모범운전자) 운영관리</p> <p>마. 교통체제 개선(T.S.M)업무중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p> <p>바. 운수행정 협조업무</p> <p>사. 교통사고 방재대책</p> <p>야. 교통사고 원인과 통계분석</p> <p>차. 교통안전지도 제정</p> <p>차. 교통 장애물제 대한 지도 단속</p> <p>키. 안전 운전관리자 지도</p> <p>타. 교통 관제센터 운영</p> <p>파. 교통민원실교센터 운영</p> <p>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p> <p>동조 동항 제 3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라. 전자신호 건설실 운영</p>	<p>동조 동항 제 4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VTR탄속반 운영</p> <p>제65조(경비과)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1) 경비과에 경비 1제, 경비 2제와 경호제출 두고 제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p> <p>동조 제 2항 제 1호 "마"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p> <p>마. 대패러 진압</p> <p>동조 제 2항 제 4호 기마대 이하 "가" 목내지 "나" 목을 삭제한다.</p> <p>제 66조(작전과) 제 2항제 1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하" "거" 목을 신설하며</p> <p>바. 5분대기 부대 및 후속 증원 부대, 후속지원대 운영지도</p> <p>하. 검문소 설치 및 운영지도</p> <p>거. 전시 수도권 주민통제</p> <p>동조 동항 제 2호 "아" "자" 및 "차"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아. 규율대 운영제회수팀 및 시행자, 복무규율 위반자 지도단속 및 교양차, 전부경찰 순경관련 사건조사처리</p> <p>제 67조(보안과) 제 2항제 1호 "바" 목을 다음과같이 개정하고 "거" "닉" "러" "리" 및 "머" 목을 신설하며</p>
--	--

바. 총포 화약류 사격장 설치 등 인허가와 지도단속  
 거. 경호대의 안전활동계획 수립 시행 및 지도단속  
 너. 폭발물 처리 진압반 운영  
 다. 고압가스 및 유독가스 관련 업무 협조  
 라.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권려 발급  
 미. 폭발물 탐지 등 안전 검측 장비 관리  
 동조동항 제2호 “차”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 한강순찰대 운영  
 동조동항제3호 “자” 및 “카”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년범죄 수사 및 지도  
 차. 소년범죄 사료수집 분석  
 제 69 조 (형사과) 제 2 항 제 2 호 “다” 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 한다.  
 아. 학원, 노사 등 집단범죄 및 유인물 사범의 수배, 검지, 조사, 신병 처리  
 제 75 조 (기동대)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 기동대에 행정계, 작전계, 장비계, 진압중대, 특별순찰대, 제 3 기동대 분 두고 계장 (중대장) 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동조제 2 항 제 1 호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 영창관리 및 수감자 안전보호  
 동조 제 2 항 제 7 호 선결 기율대 이하를 삭제한다.  
 제 76 조 (중앙청 경비대) 를 제 76 조 (정부 종합경사 경비대) 로 개정하고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종합경사 경비대에 행정계와 경비소대 및 국무총리 공관 경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과전대를 둔다. 과전대장 및 계장 (소대장) 은 경장 또는 경위로 보한다.  
 (2) 중앙청 경비대의 지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부 기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 현 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 2159 호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시민봉사실) 제 3 항 제 1 호 “나”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나. 구, 동민원 업무의 개선지도

동조 동항 제2호 "라"목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건축물 관리대상 관리 및 제  
증명 발급

제3조(총누과) 제2항 제1호 "기"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가. 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 감독

동조 동항 제3호 "사"목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거" 및 "너"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행정사사허가 및 부동산 증개  
업 허가 지도감독  
거.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관련업무  
너. 동행정 관련문서 및 회의통계

제4조(기획감사과) 제2항 제1호  
"사"목을 삭제하고 "아"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라"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성 모니터 운영 및 구행정  
여론 청취

제6조(민방위과) 제2항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고 "타" "파" "하" "저" "너"  
및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자. 민방위대의 동원 및 자원관리  
타.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 운  
영에 관한 사항  
파.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하.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응급  
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  
보상협의  
거. 민방위대의 신고망 운영관리  
너. 관내 민방위 기술차별 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에 대한 지휘감독  
더. 관내 직장민방위 대원의 명부  
작성관리

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 교육훈련계  
가.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의 통계  
및 소산 수송통제  
나.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계획수립  
실시  
라. 민방위 교육 보조자료 연구발전  
마. 민방위의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바. 홍보 기자재관리  
사. 화재방 오염의 방지측정 및  
재독기 등의 장비관리 운영  
아. 민방공 세부시행 계획수립 및  
실시  
자. 동화 및 음향관계 통제

동조 동항 제3호 "다"목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현부관계 재증명 발급

제11조(위생과) 제2항 제2호  
"가" 및 "사"목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가.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수영장업소, 미·미용업소, 유기장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구역업소, 위생처리수처리제 제조업소, 세척제 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장난감제조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사.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제 12조 (산업과) 제 2항 제 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업용 임대건물에 관한 업무

제 15조 (주택과) 제 2항 제 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전계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동조 동항 제 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공주택관리, 용자금 회수

제 16조 (도시정비과) 제 2항제 1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 도심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전계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동조 동항 제 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이물질소화차등과 업무 지도감독

제 17조 (건축과) 제 2항 제 1호

"마"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 일반지구의 위험건물, 축대, 린

계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사. 축대의 안전도 조사

제 18조 (공원녹지과) 제 2항 제 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임야 및 개발제한 구역내의 위험건물, 축대, 전계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제 19조 (건설관리과) 제 2항 제 1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사용허가과 관리

나.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정용료 부과징수

제 20조 (토목과) 제 2항제 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의 허가 동조 동항 제 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자.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의 허가

동조 동항 제 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수도 계획장시 관리

제 21조 (수도관리과) 제 2항 제 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사. 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처분

동조 동항 제 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타. 급수사용료 납부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동조 동항 제 3호 "라"목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하수도사용 조례위반자 적발 및 가산금의 과징



사 령

◎ 1987년 2월 19일자

령제 37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홍승휘	원예 의하의 그림을 면함.	의 약 과	지 방 약 사

령제 38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진창섭	강서구보건소	서대문병원	지 방 약 사

◎ 1987년 2월 21일자

령제 39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박관수	서울특별시 경찰국과전 (87.2.21-87.6.30)	운수 2과	지 방 기 계 기 사
박종화	운수 2과 파견해제	김포수원지사무소	지 방 기 계 기 사 보

서울특별시장